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,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 전자상거래통관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빅데이터분석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빅데이터분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6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

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성남세관장·파주세관장·경남서부세관장·전주세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성남세관장·파주세관장·경남서부세관장·전주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국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11조제2항 단서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, 감사담당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, 감사담당관”으로, “기술서기관 또는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, 협업검사센터장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

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, 협업검
사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
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
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“(5급)”을 “(5급)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(4급)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34조제2항 단서부터 같은 조 제4항 단서까지 중 “7퍼센트”를 각각 “10
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4, 별표4의2, 별표6, 별표6의2, 별표7, 별표7의2, 별표8, 별표8의2
내용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0 제1호의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3년 9월
30일”을 “2025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정보데이터정책관) ① (생 략)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 데이터기획담당관 · 정보관리담 당관 · 빅데이터분석팀장 · 연구 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 장을 두며, 정보데이터기획담당 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<u>부이사 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</u> , 빅데이터분석팀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</u> ,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 스템운영팀장은 <u>서기관 · 기술 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 한다.</u> ③ ~ ⑦ (생 략) 제3조의6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 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보한다.</u> 제4조(통관국) ① (생 략) ② 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 · 관세국경감시과 · 수출입안전검 사과 · 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	제3조의3(정보데이터정책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부이사 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, 빅데이터분석팀장은 과 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----- ----- 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 ----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제3조의6(운영지원과) ----- 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 제4조(통관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

세산업지원과를 두되, 통관물류
정책과장·수출입안전검사과장
·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
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
서기관으로 보하고, 관세국경감
시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
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8조(중앙관세분석소) ① 소장은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
한다.

②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
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, 총괄
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·행정
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
하고,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
보한다.

제10조의2(관세평가분류원) ①
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
으로 보한다. 다만, 「행정기관
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
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
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
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
보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
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중앙관세분석소) ① ----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
---.

②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행
정사무관 -----
-----.

제10조의2(관세평가분류원) ①
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
기관으로 보한다. -----

----- 부이사관
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세관) ① 인천공항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, 서울세관장·부산세관장·인천세관장·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, 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성남세관장·파주세관장·경남서부세관장·전주세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,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국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

제11조(세관) ① -----

----- .

----- 과학기
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성

남세관장 · 파주세관장 · 경남서

부세관장 · 전주세관장은 과학

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

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전산사무

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

사무관으로-----

----- .

② 국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
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

만, 서울세관 통관국장·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⑪ (생략)

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·담당관·조사관·검사관은 행정사무관으로,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, 감사담당관·수출입물류과장·통관정보과장·여행자통관1과장·여행자통관2과장·특송우편총괄과장·조사총괄과장·마약조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장비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,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⑬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·담당관·심사관·조사관·검사관은 행정사무

관이다.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⑪ (현행과 같음)

⑫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-----
-----.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-----

-----.

⑬ -----

관과장·자유무역협정검증1과
장 및 조사총괄과장, 대구세관
·광주세관·울산세관의 통관
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
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
관으로,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
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
로, 평택세관의 물류감시과장
및 울산세관의 감시과장은 행정
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
해양수산사무관으로, 장비관리
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
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
해양수산사무관으로, 협업검사
센터장은 서기관·행정사무관
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⑭ (생략)

제26조(지원센터) ① (생략)

② 지원센터장은 행정사무관·
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
통신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
관세주사·방송통신주사·해양
수산주사로 보한다. 다만, 부평
지원센터장·구로지원센터장·
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
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
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
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, 협업검
사센터장-----

⑭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지원센터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
-----.

통영지원센터장·대산지원센터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33조(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,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(행정사무관 1명, 관세주사 7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-----
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. -----

----- 10
퍼센트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(5
급)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(4
급)---.

③ (생략)

제33조의2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

례) ①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
직제」 제29조에서 “기획재정
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
란 감사관을 말한다.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
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
라 관세청의 법무담당관 및 관
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과장 중
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
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
수 있다.

제3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 ① 삭제

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
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
같다. 다만, 「관세청과 그 소속
기관 직제」 제28조제1항 단서
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
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
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
의2와 같으며, 별표 6의2의 정
원 중 1명(관세주사보 1명)은
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3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)

②-----

----. -----

----- 10퍼센트-----

-----.

③ -----

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」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.

④ 세관관서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. 다만,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, 별표 8의2의 정원 중 10명(관세주사 9명, 관세주사보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⑤ ~ ⑦ (생략)

 ---. -----

 ----- 10퍼센트 -----

 -----.

④ -----

 -----.

 --- 10퍼센트 -----

 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